

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규 개정 예고

「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「제규정관리규정」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규 개정 예고합니다.

2023년 3월 20일

운 용 지 원 실 장

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1. 개정이유

-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개선위원회 신설 필요
-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과 「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」 간 중복조항 정비를 통해 개정절차 효율성 제고

2. 주요내용

- 기금운용본부 내 “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” 설치(안 제36조의3 신설)
 - 위원회의 구성 및 안건에 관한 사항 규정
-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과 중복된 조항의 내용을 “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에 따른다”로 변경(안 제18조, 제23조, 제24조, 제28조, 제43조, 제65조, 제71조)

3. 의견제출

이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국민은 2023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별첨)를 제출(담당자: 운영기획부 진현경, 전화번호: 063-711-0132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
나. 소속, 성명, 전화번호

※ 제출방법: 우편, 이메일, 팩스

- (주 소)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31, 5층 운영기획부
- (이메일) jhk1119@nps.or.kr
- (팩 스) 063-900-3480

붙임 : 「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」 일부개정규정안 1부

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험의 인식 및 측정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8조에 따른다.

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준법감시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며 수행 직무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20조에 따른다.

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기금운용성과의 평가목적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21조에 따른다.
- ② 기금운용성과의 평가시기, 평가기간 및 평가방식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21조에 따르되, 연간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- ③ 성과평가의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21조에 따른다.

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운용성과의 평가에 사용되는 수익률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21조에 따른다.

제28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장에 제3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3(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) ① 투자대상기업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향,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.

1. 소유분산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
2.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
3.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·자문 및 개선

⑤ 위원은 위원회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,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투자 정보, 그 밖의 기밀을 누설할 수 없다.

⑥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「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」 제19조를 준용한다.

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국내채권의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6조에 따른다.

제4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대체투자의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6조에 따른다.

제7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단기자금의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6조에 따른다.
- ② 외화단기자금의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6조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제18조(위험의 인식 및 측정) ① <u>위험의 인식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험을 가</u> <u>져올 수 있는 모든 업무 활</u> <u>동 및 자산 운용 등을 대상</u> <u>으로 한다.</u> ② <u>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</u> <u>위험은 다음 각 호의 위험</u> <u>을 포함한다.</u> 1. <u>발행자 또는 거래상대방</u> <u>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투</u> <u>자금액의 회수가 어렵거나</u> <u>투자자산 가치 하락으로</u> <u>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</u> <u>험[“신용위험”이라 한다]</u> 2. <u>주가, 이자율, 환율 등의</u> <u>시장가격 변화로 인하여</u> <u>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</u> <u>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</u> <u>위험[“시장위험”이라 한</u> <u>다]</u> 3. <u>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</u> <u>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</u>	제18조(위험의 인식 및 측정) ① <u>위험의 인식 및 측정에</u> <u>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</u> <u>금 운용지침」 제18조에 따</u> <u>른다.</u> <u><삭 제></u>	

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[“유동성위험”이라 한다]

4. 법 해석 또는 계약상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기금이 입게 될 수 있는 위험[“법규위험”이라 한다]

5. 적절하지 아니한 내부통제제도나 업무처리절차, 시스템의 오류,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[“운영위험”이라 한다]

③ 제1항에 따라 인식하는 위험은 계량화가 가능한 경우 시장 데이터 등 객관적인 자료 및 통계치를 근거로 측정한다.

제23조(내부통제) ① 준법감시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규정 절차의 수립 및

<삭 제>

제23조(내부통제) ① 준법감시인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며 수행직무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20조에 따른다.

관리

2. 기금운용 임직원의 법규

준수 여부 점검 및 보고

3. 기금운용 임직원에 대한

준법교육

4. 그 밖의 기금운용 관련

내부통제를 위해 이사장과

리스크관리위원회가 부여

한 업무

② (생략)

제24조(평가원칙) ① 기금운용성과의 평가는 기금운용성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려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며, 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개선과 발전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기금운용성과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되, 3년 이상의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연간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는 벤치마크지수와 의 정량적 비교 평가 외에 운용체계와 위험관리의 개선 등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평가원칙) ① 기금운용성과의 평가목적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21조에 따른다.

② 기금운용성과의 평가시기, 평가기간 및 평가방식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21조에 따르되, 연간 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.

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한다.

③ 성과평가는 국제성과평가기준(GIPS®)을 준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.

제28조(수익률의 산출) ① 기
금운용성과의 평가에 사용
되는 수익률은 시간가중수
익률을 원칙으로 하되 기금
전체에 대해서는 금액가중
수익률을 병기한다. 다만,
자산의 투자 조건 등 상황
에 따라 장부가수익률 등을
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.
② 수익률을 산정하는 경우
실현손익 및 미실현손익을
모두 포함하는 총수익을 대
상으로 한다.

<신 설>

③ 성과평가의 신뢰성 확보
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
기금 운용지침」 제21조에
따른다.

제28조(수익률의 산출) ① 기
금운용성과의 평가에 사용
되는 수익률에 관한 사항은
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
침」 제21조에 따른다.

<삭 제>

제36조의3(건강한 지배구조
개선위원회) ① 투자대상기
업의 가치제고를 위하여 바
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
향,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
기준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
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
기금운용본부에 건강한 지

배구조 개선위원회를 설치
· 운영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하는 10명 내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개선 의견을 제시한다.

1. 소유분산 기업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방향의 제시

2. 의결권 행사 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합리적 개선

3.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상황 점검·자문 및 개선

⑤ 위원은 위원회 운영 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보안
을 유지하고, 위원으로서
활동하면서 알게 된 투자
정보, 그 밖의 기밀을 누설
할 수 없다.

제43조(운용원칙) ① 국내채권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만기 보유와 채권종류별, 발행자별, 계열별(회사채의 경우) 및 만기 구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.

② 국내채권은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, 일정 범위 안에서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한다.

제65조(운용원칙) ① 대체투자는 주식·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자산과 상이한 위험-수익 특성을 가지므로 이를 활용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.

⑥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은 「기금운용 내부통제규정」 제19조를 준용한다.

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.

제43조(운용원칙) ① 국내채권의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6조에 따른다.

<삭 제>

제65조(운용원칙) ① 대체투자의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6조에 따른다.

② ~ ⑥ (생략) 제71조(운용원칙) ① 단기자금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,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운용기간 3개월 이내의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한다. ② 외화단기자금은 안정적인 외화유동성 관리를 위해 운용하되,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일평균 30억미합중국달러 한도 내에서 운용한다.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제71조(운용원칙) ① 단기자금의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6조에 따른다. ② 외화단기자금의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은 「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」 제16조에 따른다.
--	--